

2025년도 특정감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연구개발비 관리 점검 3차 -

2025. 12.

KEIT 한국신업기술기획평가원
감 사 단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및 감사 중점사항	1
3. 감사기간 및 인원	2
4. 점검대상 과제	2
II . 감사결과	4
1. 총평	4
2. 지적사항 총괄	4
3. 지적사항 요약	4
III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6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6
2. 현지조치사항 및 모범사례 일람표	6
첨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7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한국산업기술혁신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사단에서는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과 평가관리원 직원의 연구개발비 관리 업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감사대상 및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적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센터 및 감사지원전문가 정보 공유 등 제보사항을 통해 확인된 연구비 부정사용 의심과제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기획평가원의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 및 “사업관리시스템” 내 민간부담금 납부 이력을 활용하여 미납이 의심되는 과제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점검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였다.

[표 1] 감사 중점사항

감사 중점사항
- 연구수당 회수 및 목적 외 사용 등 - 인적·물적 분할이 불명확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 - 민간부담 관련 기관 의무불이행 - 세금계산서 수정 및 취소분로 인한 초과집행분의 미반환

3. 감사기간 및 인원

본 감사는 2025. 10. 20.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3일 간의 예비조사 기간을 거쳐,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감사반장 1명, 감사반원 2명을 투입하여 2025. 11. 14.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4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는 내부감사인 검토 과정을 거쳐, 2025. 12. 15.에 상임감사가 최종 확정하였다.

4. 점검대상 과제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하여 초과 집행 내역이 탐지된 과제 1건,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비를 집행한 과제 2건, 기관부담분 현물장비가 협약 시 부담 계상된 과제 1건,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자들에게 지급한 후 회수하여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과제 1건 등 총 5건 과제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점검대상 과제

연 번	과제 번호	연구개발과제명	해당기간	대상기관 명	부서명
1	○○-○○ ○○-○○ ○○○○ ○○	○○○○○○○○○○○○○○○○○○○○ ○○○○○○○○○○○○○○○○○○○○	2024-08-01 ~2027-12-31	(주)○○○	○○○○○ 실
2	◆◆◆◆ ◆◆◆◆	□□□□□□□□□□□□□□ □□□□□□□□□□□□□□	2022-04-01 ~2026-12-31	□□□□□ □□□(주)	◆◆◆◆실
3	▼▼▼▼ ▼▼▼▼	●●●●●●●●●●●●●●●● ●●●●●●●●●●●●●●●●	2022-04-01 ~2026-12-31	□□□□□ □□□(주)	◆◆◆◆실
4	♠♠-♠♠ ♠♠-♠♠ ♠♠♠♠ ♠♠	■ ■	2022-04-01 ~2023-12-31	■ ■ ■ ■ ■ ■(주)	♠♠♠♠♠ ♠실
5	♠♠♠♠ ♠♠♠♠	△△△△△△△△△△△△△△ △△△△△△△△△△△△△△	2021-06-01 ~2023-12-31	주식회사 △△△△△ △	♠♠♠♠♠ 실

II. 감사결과

1. 총평

연구수당 집행부적정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 부적정 집행사례를 점검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하고 올바른 연구개발비 사용을 유도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합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회수	감액	기타								
4	-	738,743	-	-	4 (738,743)	4 (738,743)	-	-	-	-	-	-	-	-	-	-

3. 지적사항 요약

【처분요구사항】

1)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연구수당을 회수하여 연구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18,000,000원 중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17,392,917원의 납부가 필요하다. (시정 1건)

2)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집행 등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543,758,400원 중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515,487,353원의 회수가 필요하다. (시정 1건)

3) ♠♠♠♠♠♠♠♠♠♠♠♠♠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협약 시 현물을 부당하게 계상하는 등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205,050,000원의 회수가 필요하다. (시정 1건)

4)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정산완료 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833,091원 중
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812,771원의 회수가 필요하다.
(시정 1건)

2. 관련 규정(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에서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의 회수 및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별표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 금액은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기획평가원은 2021년도 사업에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전문기관이며, (주)○○○○은 [표 1]과 같이 주관기관으로서 본 감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주)○○○○은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표 1] (주)○○○ 수행 연구개발과제 현황

연구개발과제명(과제번호)	총 개발기간	기관 역할	과제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천원)	기관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천원)
○○○○○○○○○○○○○○○○○○○○○○○○○○○○○○ ○○○○○○○○○○○○○○○○○○○○○○○○○○○○○○ ○○○(○○○-○○○○○-○○○○○○○ ○○○○)	2024-08-01 ~2027-12-31	주관연구 개발기관	4,542,100	1,601,100

그런데 (주)○○○○은 [표 2]에 명시된 참여연구자들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을 임의로 지정한 총무에게 현금지급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을 회수하는 등 연구수당 계상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실지감사에서 확인되었다.

[표 2] 연구수당 지급 내역

연번	성함	부서명	과제참여기간	사용일자	사용금액
1	☆☆☆	☆☆팀 (프로젝트 리더)	24.08.01 ~ 24.12.31	2025.04.17	5,960,000
2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120,000
3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120,000
4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120,000
5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120,000
6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120,000
7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120,000
8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2,650,000
9	■ ■ ■	■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120,000
10	★ ★ ★	★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5,300,000
11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120,000
12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120,000
13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120,000
14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120,000
15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120,000
16	♠♠♠	♠♠팀	24.08.01 ~ 24.12.31	2025.04.17	2,650,000
합계					18,000,000 원

관계부서 의견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기 지급된 연구수당을 참여 연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연구 외 목적 등으로 사용한 건에 대해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실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7,392,917원¹⁾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1) 회수 대상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부적정 집행액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율(%)	부적정집행액(원)	회수 대상액(원)
과제번호	단계-연차					
○○-○○ ○○-○○ ○○○○ ○○	0-2	401,100,000	14,000,000	96.6	18,000,000	17,392,917

2. 관련 규정(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통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기획평가원은 〇〇〇〇〇〇〇〇〇사업에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전문기관이며, 〇〇〇〇〇〇〇〇(주)는 [표 1]과 같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본 감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〇〇〇〇〇〇〇〇(주)는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표 1] □□□□□□□□(주) 수행 연구개발과제 현황

연구개발과제명(과제번호)	총 개발기간	기관 역할	과제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천원)	기관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천원)
□□□□□□□□□□□□□□□□ □□□□□□□□□□□□□□□□ □□(◆◆◆◆◆◆◆◆◆◆)	2022-04-01 ~2026-12-31	주관연구 개발기관	5,587,600	3,456,350
●●●●●●●●●●●●●●●●●●●● ●●●●●●●●●●●●●●●●●●●● ●●(▼▼▼▼▼▼▼▼▼▼)	2021-09-01 ~2024-12-31	참여연구 개발기관	3,743,000	716,000

□□□□□□□□(주)는 [표 2]와 같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위해 (주)★★★에 연구재료비를 집행하였다.

[표 2] 연구재료비 집행 내역

과제번호	단계- 연차	항목	거래처명	품목	사용금액(원)
◆◆◆◆◆◆◆◆◆◆	0-1	연구재료비	(주)★★★	□□□□□□□□□□□□□□□□	35,000,000
◆◆◆◆◆◆◆◆◆◆	0-2	연구재료비	(주)★★★	□□□□□□□□□□□□□□□□	140,000,000
◆◆◆◆◆◆◆◆◆◆	0-3	연구재료비	(주)★★★	□□□□□□□□□□□□□□□□	35,000,000
◆◆◆◆◆◆◆◆◆◆	0-3	연구재료비	(주)★★★	□□□□□□□□□□□□□□□□	1,258,400
▼▼▼▼▼▼▼▼▼▼	1-1	연구재료비	(주)★★★	□□□□□□□□□□□□□□□□	60,000,000
▼▼▼▼▼▼▼▼▼▼	1-1	연구재료비	(주)★★★	□□□□□□□□□□□□□□□□ □□□□□□□□□□□□□□□□ □□□□□□□□□□□□□□□□ □□□□□□□□□□□□□□□□	115,500,000
▼▼▼▼▼▼▼▼▼▼	1-2	연구재료비	(주)★★★	□□□□□□□□□□□□□□□□	139,500,000
▼▼▼▼▼▼▼▼▼▼	1-2	연구재료비	(주)★★★	□□□□□□□□□□□□□□□□	17,500,000
합 계					543,758,400

□□□□□□□□(주)와 (주)★★★은 서로 법인격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지배구조를 확인 결과 ■■■ 부회장은 최대주주²⁾와 가족관계(아들)이면서 (주)★★★의 지분 32%를 가진 주주인 사실이 현장실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 부회장³⁾은 □□□□□□□□(주)가 (주)★★★에 발주한 [표2]의 연구재료비 집행승인 기안문의 최종 결재권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인적구분이 불명확한 동일인물이 그룹사 내 특수관계자간 연구비 집행에 모두 관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장조사에서 □□□□□□□□(주)는 해당 연구비 집행 시 ※※※ ※※※과 관련한 기술유출의 문제를 우려하여 계열사인 (주)★★★에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통운영요령 제30조제7항1호에서 명시한 사전승인을 득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연차진도 점검시 이와 관련한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승인받거나, 비용 집행 전 과제담당자에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이 본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동 요령 제30조7항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이득 취득 등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원칙적으로 내부거래를 통한 연구개발비를 집행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승인 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는 연차진도 점검위원회 및 전문기관의 승인을 누락하는 등 연구비 내부거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미비하므로 이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6]의 회수 기준에 해당된다.

2) ※※※ 회장으로 □□□□□□□□(주)와 (주)★★★의 지분을 각각 79.33%, 40%를 보유

3) 현 □□□□□□□□(주)과 (주)★★★의 사내이사이며, □□□□□□□□(주)의 대표이사를 역임

관계부서 의견

◆◆◆◆실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사용기준을 위반한 집행내역에 대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실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534,758,400원 중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515,487,353원⁴⁾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4) 회수 대상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부적정 집행액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율(%)	부적정집행액(원)	회수 대상액(원)
과제번호	단계-연차					
◆◆◆◆	1-1	650,000,000	35,000,000	94.9	175,500,000	166,532,846
	1-2	796,000,000	43,800,000	94.8	157,000,000	148,811,621
소 계						315,344,467
▼▼▼▼▼▼▼▼	0-1	110,000,000	7,000,000	94.0	35,000,000	32,905,982
	0-2	187,000,000	10,100,000	94.9	140,000,000	132,825,976
	0-3	244,000,000	13,100,000	94.9	36,258,400	34,410,928
소 계						200,142,886
합 계						515,487,353

2. 관련 규정(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 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하면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만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6조(영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제1항에 따르면, 기관이 현물을 부담할 시에는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기획평가원은 동 연구개발과제의 전문기관이며, ■■■■■■(주) (구. ■■■■■■(주))은 [표 1]과 같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본 감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주)은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표 1] ■■■■■(주) 수행 연구개발과제 현황

연구개발과제명(과제번호)	총 개발기간	기관 역할	과제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천원)	기관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천원)
 과학기술부 한국교육진흥재단 (주) 한국교육진흥재단	2022-04-01 ~2023-12-31	주관연구 개발기관	1,050,000	750,000

그런데 ■■■■■(주)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현물 부담을 위해 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러나 해당장비들을 확인한 결과, 협약 상에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장비, 내용연수가 만료되어 현물계상이 불가능한 장비를 제출하였고 협약당시 내용연수가 만료되지 않은 장비의 경우 구입가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현물로 계상한 사실이 본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표 2] 현물 부당계상액 현황

단계 -연차	품목	취득일자	취득가액	부담가능액	비고
0-1	♣♣♣ ♣♣♣♣♣	2018-03-05	30,000,000	6,000,000	구입가의 20%초과
	▽▽▽▽▽▽▽▽	2018-03-08	8,000,000	1,600,000	구입가의 20%초과
	◇◇◇◇◇◇◇◇	2018-03-08	13,000,000	2,600,000	구입가의 20%초과
	▨▨▨ ▨▨▨	2018-10-02	20,000,000	0	자산 미계상
	♠♠♠ ♠♠ ♠♠♠♠♠♠♠♠	2021-12-22	210,752,276	0	자산 미계상
	부담가능액 합계			10,200,000	
	RCMS 현물 집행액			92,250,000	
	초과금액			82,050,000	
0-2	♥♥♥♥♥♥♥♥♥♥♥♥♥♥	2018-03-02	35,000,000	0	내용연수 만료
	●●●●●●●●●●●●●●	2018-03-02	10,000,000	0	내용연수 만료
	♣♣♣ ♣♣♣♣♣	2018-03-05	30,000,000	0	내용연수 만료
	◆◆◆ ◆◆◆◆◆◆◆◆◆ ◆◆◆◆◆	2018-03-19	35,000,000	0	자산 미계상, 내용연수 만료
	♠♠♠ ♠♠ ♠♠♠♠♠♠♠♠	2021-12-22	210,752,276	0	자산 미계상
	부담가능액 합계			0	
	RCMS 현물 집행액			123,000,000	
	초과금액			123,000,000	

관계부서 의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실은 기관의 현물부담내역 중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실)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5,050,000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4	감사자	●●●,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812,771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실)	처분요구일	2025. 12.	회신 기한일	2026. 2. (통보일로부터 2개월)

시 정

제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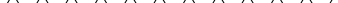
관 련 부 서 ♠♠♠♠♠본부(♠♠♠♠♠실)

조 치 부 서 ♠♠♠♠♠본부(♠♠♠♠♠실)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국무조정실은 ‘17년 국가 R&D 점검 시 각 부처별 연구비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로 집행한 연구비의 취소·수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사업에서 지원한 
과제는 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통운영요령」 제34조의2제7항 1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
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사용 사실이
확인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기획평가원은 [표 1] 사업에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전문
기관이며, 주식회사 △△△△△△은 [표 1]과 같이 주관기관으로 본 감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21 -

[그림1] 주식회사 △△△△△ 연구개발비 집행 및 세금계산서 수정내역

원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단위: 원)

승인번호	작성일자	발행일자	공급받는자		공급하는자		공급금액	부가가치세금액	합계금액
			사업자번호	회사명	사업자번호	회사명			
	2023.11.24	2023.11.24					10,233,010	1,023,301	11,256,311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총 2건)

데이터 수신일자 : 2025.08.21 (단위: 원)

승인번호	차수	작성일자	발행일자	수정사유내용	비고내용	공급금액	부가가치세금액	합계금액
	2	2024.03.29	2024.03.29	공급가액변동		833,091	83,309	916,400
	2	2024.05.09	2024.05.09	공급가액변동		-1,666,182	-166,618	-1,832,800
세금계산서 취소금액 합계						-833,091	-83,309	-916,400

연구개발비 집행 목록 (총 1건)

(단위: 원)

전문기관명	과제번호(단계/연차)	연차개발기간	정산 형태	정산대상 단계/연차	사용일자	비목정보	공급금액	부가가치세금액	합계금액
		정산대상기간			이체일자	품목명			
한국산업기술기 획평가원		2023.01.01~2023.12.31	단계	0/1 ~ 0/3	2023.11.24	간접비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10,233,010	0	10,233,010
		2021.06.01~2023.12.31			2023.11.30	특허출원			
RCMS 집행금액 합계							10,233,010	0	10,233,010

관계부서 의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 실은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오류로 인해 과다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 대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실장)은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오류로 인해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사용잔액으로 남아있는 833,091원 중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812,771원⁵⁾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5) 회수 대상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부적정 집행액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율(%)	부적정집행액(원)	회수 대상액(원)
과제번호	단계-연차					
♣♣♣♣♣♣♣♣	0-3	900,000,000	22,500,000	97.6	833,091	812,771